

2003년도 제1회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96
------	-----

1. 제안경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 8. 14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 8. 18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사유

- 2003년도 예산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여건 변화, 시책 변동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며,
- 특히 국고보조금의 내시액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 추가 소요예산을 편성·반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과 건강 증진에 서울시 가용재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 감 률
계	1,497,067	1,472,129	24,938	1.7%
일 반 회 계	1,213,067	1,188,129	24,938	2.1%
특 별 회 계	284,000	284,000	-	-

- 2003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조 2,130억 6,700만원으로 31개 사업에 249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이는 기정예산 1조 1,881억 2,900만원과 비교할 때 2.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2)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 시민기초생활보장 - 33억 6천만원
  - 민간참여의 사회복지체계 인프라 강화 - 4천 3백만원
  - 소외여성과 아동의 사회참여 확대 - 18억 4천 4백만원
  -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 7억 7천 9백만원
  -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 97억 1천 4백만원
  -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 83억 1천 4백만원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확충 - 16억 6천 1백만원입니다.
- 추가 또는 경정된 내역을 살펴보면,
  - ① 추가사업은 7개 사업 총 111억 2천 3백만원으로
    - 서울사랑시민상 시상(복지부문) - 4천 3백만원
    - 독립유공자 복지회관 건립 - 10억원
    -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 - 90억원
    - 남부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기능보강 - 7천만원
    - 서울장애인복지관 증축 - 3억원

- 시립보라매병원 신관 신축 - 6억 7천만원
- 지역보건의료계획 학술용역 - 4천만원이고,
- ② 증액사업은 24개 사업 총 138억 1천 5백만원으로
  - 노숙자 재활센터 건립 - 23억 6천만원
  -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 1억 7백만원
  -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 3억 5천 7백만원
  - 노인자활 후견기관 운영 - 7천 1백만원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 - 1억 1천만원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8억 9천 7백만원
  - 장애인 승강 편의시설 확충 - 30억원
  -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 - 6천 9백만원
  -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운영 - 1억 3천 1백만원
  - 동천재활체육센터 건립 - 1억 4천 6백만원
  -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건립 - 8억 4천 7백만원
  - 장애인의료 재활시설 운영 - 3천 8백만원
  -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 6천 4백만원
  - 장애인 의료시설 기능보강 - 12억 5천 6백만원
  - 장애인 체육시설 기능보강 - 2억 9천 7백만원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8억 6천 3백만원
  -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 4억 6백만원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 - 6천 4백만원
  -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 1억 2천 5백만원
  -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 8억 7천 6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 1억 2천 6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추가 지원 - 4억 1천만원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2억 4천 3백만원
  - 시립보라매병원 의료장비 구매 - 9억 5천 2백만원이며,

③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3)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요인 분석

- 복지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 ①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당초예산 편성시에 비하여 증액되거나 감액됨으로써 이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조정하였으며,
  - ② 기정예산에 없었던 추가사업이 포함·반영되었고,
  - ③ 기타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 구체적인 증액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계	추 가		국 고		사 업		사업비		기 타		
		%	사 업	%	내 시	%	확 대	%	부 족	%		
사업건수	31	100.0	7	22.6	13	41.9	5	16.1	5	16.1	1	3.2
사 업 비	24,938	100.0	11,123	44.6	5,296	21.2	1,594	6.4	4,564	18.3	2,360	9.5

(4) 사업별 검토의견

-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에 대하여는 법령상 시비 부담분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므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는 생략하기로 하고,

- 다른 사업 가운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독립유공자 복지회관 건립비 보조 사업

- 국가보훈처 2003년도 예산에 당해 사업 건축비로 15억원을 확보하였고 중앙부처에서도 우리시에 부지매입비 지원을 요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은 광복회의 숙원사업이기는 하나 독립유공자의 경우 104명밖에 되지 않고(전국 규모는 360명) 대부분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당해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건립 후 광복회 자체 자금으로 회관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당해 단체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부지매입 추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업주체인 광복회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당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②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

- 본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고내시 확정액에 따라 서울시 부담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당초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선정하던 것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원시점을 선정된 날에서 신청당시로 앞당김으로써 지원대상이 확대된 점은 인정되나,
- 구체적으로 실제 지원대상 인원이 7,800명에서 14,200명으로 6,400명(82.1%)이 증가되었다면, 당초예산 편성시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하여는 내년도 결산 심사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4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보다 세심한 사전 조사가 요구된다고 봄.

③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 사업

- 서울시 치매노인은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에 비례하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시정운영 4개년계획」 20대 중점과제로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2002년도	⇒	2006년도
치매노인 인구 49천명 시설보호 대상 4천명		치매노인 인구 61천명 시설보호 대상 5천명

- 본 사업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2006년까지 총 2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자치구별 노인인구, 지역여건 등 객관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④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지원 사업

- 본 사업은 각 자치구의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고 그 충족도가 100% 이상인 중구, 서초, 강남 등 3개 자치구를 2003년도부터 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이들 자치구에도 시비를 지원하기로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반영한 것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문제는 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경로당 활성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복지 수요에 대한 소요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봄.

⑤ 실버박람회 개최 사업

- 본 사업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취업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상반기 실버박람회 실시 결과 66세 이상 노인 22,000여명과 구직업체 220여개가 참여하여 총 2,860명이 취업된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박람회를 통해 취업된 구직자들이 취업된 업종, 취업 후 근무여부 등 박람회 개최 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므로, 자칫 일회성 행사로 그칠 수 있는 사업비의 반영에 대해 하반기 실버박람회의 경우에는 구직 및 취업 노인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판단됨.

⑥ 장애인콜택시 운영 사업

- 본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 12월에 장애인콜택시(100대)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월별 장애인 이용실적을 볼 때 아직까지 이용 효율은 높지 않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탑승연인원	82,948	10,667	12,040	14,003	15,064	15,381	15,793
- 1일평균	458	344	430	452	502	496	526
- 대당평균	6.0	4.6	5.5	5.8	6.4	6.4	6.7

- 운영비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연간 24억원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행대수를 늘려나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투자재원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본 사업이 아직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중교통수단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국고보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이동수당 신설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콜택시 운행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등의 대책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⑦ 승강 편의시설 확충 사업

-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하철 승강 편의시설 확충공사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지하철 승강장에 환승 및 승강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에 추가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30억원 증액 요청한 사항으로,
-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시설비는 변동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의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의 당초예산의 편성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 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의 흐름상 실 집행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해 예산의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 집행부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함.

⑧ 지역보건의료계획 학술용역사업

- 본 사업의 경우, 제142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제3기 서울특별시 보건의료계획안」 심의시 원안가결하면서 서울시 보건의료체제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추후 조속한 시일내에 이와 관련한 변경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부쳤던 사항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총 4천만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사업 내용에는 서울시 보건행정조직 강화방안, 해외 관련자료 수집, 병상 수요예측 및 공공의료기관 평가체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보다 내실 있는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서울시 보건행정조직 및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위한 소요경비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건의사항

① 국고보조금의 교부확정 내시의 시기문제

- 복지여성국의 경우, 국고보조의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41.9%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 때문에 결국 서울시의 예산구조가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가능한 한 당초예산 성립 전까지 중앙부처의 국고보조 내시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② 당초예산의 정확한 추계 미흡으로 인한 추경편성 문제

- 당초예산에서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당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2003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보수를 대폭 인상하였으나 전년도 지침에 따라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 추경예산을 통해 인상분을 다시 반영하는 것은 그 한 예라 할 수 있음.

③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비율 문제

- 법령상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나,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자립정착금」과 같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시비 의무부담 비율에 더하여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이를 포함한 예산요구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